#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

의 안 번 호 1385

제출연월일: 2017. 9. 6. 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정이유

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·지원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질 높은 관광안내를 제공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광진흥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관광의 진흥, 홍보 및 관광진흥사업 지원(안 제4조~제6조)
- 다.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2조)
- 라.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7조)
- 마.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~제26조)
- 바. 관광진흥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)

## 3. 근거법규

「관광진흥법」 제2조 및 제48조

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2018년 당초예산 반영계획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검토의견 반영
- 라. 입법예고: 2017. 7. 10. ~ 2017. 7. 31.(의견없음)

#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관광기념품"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·법인·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.
- 2. "캐릭터상품"이란 구 명의로 「상표법」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.
- 3. "관광사업자"란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.
- 4. "관광상품"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하다.
- 제3조(적용범위)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

제4조(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1. 관광객 유치 촉진
- 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 제작 및 홍보
- 3. 관광자워 발굴 및 활용
- 4.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
- 5.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
- 6.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
- 7.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)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·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 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문화, 체육, 여가(활동)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
  - 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의 개발·제작·배포 등에 관한 사업
  - 3.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
  - 4.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
- 제6조(관광진홍사업 지원)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 자,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수 있다.
  - 1.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- 2.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, 지역특산품을 개발·홍보·판매하는 경우
  - 3.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보조금의 신청·지급·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 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# 제3장 관광안내소

- 제7조(관광안내소의 설치 등)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, 홍보 및 각종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(이하 "안내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,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업무 및 기능)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관광안내와 여행상담
  - 2. 관광불편신고와 접수
  - 3. 관광홍보 및 마케팅
  - 4.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
  - 5.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
  - 6. 국내·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
  - 7.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판촉활동)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  - 1. 관광설명회,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
  - 2.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
  - 3.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

- 4.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
- 제10조(관광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)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제4 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판매한다.
  - 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판매수 익금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판매관리) ① 관광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하다.
  - ②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2조(관리규정) 안내소의 수탁기관은 안내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

- 제13조(문화관광해설사 활용) ① 구청장은 구민,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(이하 "해설사"라 한다)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.
- 제14조(임무 등) ①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해설사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 - 1. 구의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
  - 2.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
  - 3.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
  - 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관광객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 및 태도, 성실도 등을

고려하여 차례대로 배치한다.

③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해설사증을 달아야 하며,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다.

제15조(인원 및 자격 등) ① 해설사의 인원 및 자격은 구청장이 정한다.

- 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제16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시 위촉할 수 있다.
- 제16조(위촉의 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
  - 2.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  - 3. 사회적 물의,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  - 4. 그 밖의 사유로 해설사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
- 제17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해설사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제5장 관광진흥위원회

제18조(관광진흥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- 3.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
- 4.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캐릭터상품 사용승인 심의 등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20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 1명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  - 1.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  - 2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  - 3.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 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.
- 제21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2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2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4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 -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제25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2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6장 관광진홍업무의 위탁

제27조(관광진홍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1. 관광객 유치
- 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,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
- 3.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
- 4.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, 양성 및 운영
- 5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, 방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# 제7장 보칙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[별지 제1호서식]

#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관리대장

○ 품 명:

일자	제 작		판 매		판 촉		불용폐기			
	수 량	누계	수량	누계	수량	누계	수량	누계	잔량	비고
월계										
누계										
								_		

[별지	제2호서	[식]

	울신	<u></u> 난광	역시	중구	관굉	기념	품 일	일 판I	매대장	•
일		자						·매수량 +카드)		
일일 판매량								총판매금액		
일일 판매액							+카드)			
□ 품목별 현황										
연번	苦	명	판매	보유 량	판매수량		잔량	판매금액 (원)		비고
			가격		현금	카드		현금	카드	
계										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	타사항									

# 근 거 법 규

# 「관광진흥법」 [시행 2017.3.28.] [법률 제14476호, 2016.12.27., 타법개정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7.19., 2011.4.5., 2014.5.28.>
  - 1. "관광사업"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·숙박·음식·운동·오락·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  - 2. "관광사업자"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·허가 또는 지정(이하 "등록등"이라 한다)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
  - 3. "기획여행"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·일정,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.
  - 4. "회원"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(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.
  - 5. "공유자"란 단독 소유나 공유(共有)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(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 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.
  - 6. "관광지"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  - 7. "관광단지"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  - 8. "민간개발자"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「상법」 또는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  - 9. "조성계획"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.
  - 10. "지원시설"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·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.
  - 11. "관광특구"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,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·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  - 11의2. "여행이용권"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증표를 말한다.
  - 12. "문화관광해설사"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

말한다.

- 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 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>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#### <개정 2008.2.29.>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.>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6.2.3.>
- 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- 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- 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- 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5.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-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·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있다. [본조신설 2009.3.25.]
- 제48조의4(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·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한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,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,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1.4.5.]
- 제48조의5(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,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있다.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. [본조신

### 설 2011.4.5.]

- 제48조의6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)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(開設)·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(認證)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·교육과목·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 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 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,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1.4.5.]
- 제48조의7(인증의 취소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
  - 2.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[본조신설 2011.4.5.]
- 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 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 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 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1.4.5.]

의 안 번 호

1385

## [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]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9. 6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9.(화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문화관광실장 노선숙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·지원함으로써 관광객에게 질 높 은 관광안내를 제공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2) 계획 수립, 홍보,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3)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
- 4)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)
- 5)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)
- 6) 관광진흥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)
- **다. 근거법규** :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 및 제76조

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O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고, 관광객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해 관광안내소 설치, 문화관광해설사 운영, 자문 및 심의를 위 한 위원회 구성 등으로,
- 우리 구의 관광자원 개발,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국내·외 관광객을 적 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